

의안번호	2219889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6. 9. 7.
추 계 번호	26B347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 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훈련·감사 등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 시 탐지·대응·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 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이해관계인·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기본계획 시행성과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인력으로 수립가능하다는 의견이나,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기본계획 시행성과 분석·평가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위한 우정사업정보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우정사업정보보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6)
우정사업 정보보호	우편·예금·보험 등 대국민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우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우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관제 운영,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인터넷 망분리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사업 추진 -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력관리시스템 유지·관리, ISMS-P 인증 심사(유지·갱신) 추진	7,00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의 방식·절차, 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기본계획 시행성과 분석·평가의 내용 및 실시 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